PM2021-5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서

평생교육바우처
LIFELONG EDUCATION VOUCHER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LIFELONG EDUCATION VOUCHER

CONTENTS

1.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❶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안내 ····· 02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

❶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대상 ····· 05

❷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방법 ····· 12

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역할 ····· 17

❹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 21

3.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❶ 강좌 수강료 결제 방법 ····· 24

❷ 강좌 수강료 환불 방법 ····· 24

4. 자주하는 질문(FAQ)

CHAPTER

1.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1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안내

1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의미함.

2 지원 대상자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3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연간 35만원)

※ 바우처 소진율(지원금 전액 사용) ·강좌 이수 여부(1과목 이상 이수)에 따라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35만원) 지원하여 연 최대 70만원 지원

4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에서 확인

5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수기 사례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평생교육바우처의 가치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우울증에 허리 디스크 그리고 섬유근통까지,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 이웃이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공고문을 보았다며 추천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바우처 사용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안내를 받아 바우처 사용기관을 찾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우처 35만 원은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라테스를 수강하였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아로마 테라피와 떡케이크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도 않던 저에게 바우처 카드 사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다니던 병원도 필라테스 수업을 통해 한 주에 한두 번으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면서 무기력했던 내 일상과 마음에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직접 샴푸나 화장품 등을 만들면서 소중한 내 딸에게 더 좋은 걸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배우고 싶다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나 12월 31일은 365일 중 하루일 뿐이라고 마음을 굳게 닫고 살던 저는 크리스마스에 예쁜 떡케이크를 만들어 먹으며 딸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우처 카드가 제게 준 선물은 35만 원짜리가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외출하는 곳은 병원뿐이었던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평생교육바우처'를 만나 행복을 배우고, 건강회복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걸요.

지금 저희 집에는 아로마 향기와 딸과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저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복을 감사히 여기며, 소중한 딸과 더 행복해지겠습니다.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그 날의 매화나무가 내게 전한 말,
그래, 다시 시작해! 언제? 오늘! 지금이야!

지난 1월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마이크 잡은 친구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래를 합니다.

차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아련하게 저려 옵니다.

둘째 아이 출산 후부터 앓아왔던 류마티스로 아이들 소풍 한번 따라가지 못했고 놀이터에도 혼자 나가서 놀아야 했던 아이들이 기특하게 잘 자라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 방을 열었다 닫고 열었다 또 닫고 돌아서서 덩그러니 거실에 앉으니 "나 이제 뭘 하며 살지?" 한꺼번에 닥쳐온 공허한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아이들 생각에 참고 버텨온 기억들이 빛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감기처럼 끙끙 앓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 한쪽에 자리한 매화나무에서 꽃눈이 트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열심히 살았잖아"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받았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장이 떠올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변화를 안겨줄 희망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전통 디저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전통 디저트는 종류가 다양하여 배워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학원비가 좀 부담이었지만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인생 후반을 위한 재투자로 생각하고 수제 청, 수제 식초, 도라지정과 등 여러 가지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기술이 생기니 창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 4월. 드디어 공방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 오신 지인들은 언제 이렇게 기술을 익혔는지 놀라워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과 가족들의 걱정 속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리선생님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공방에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공부도 하면서 바쁜 일상을 이어갑니다.

공허함에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지난 시간, 아팠던 시절, 방황하던 나를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평생교육의 기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시니어 클럽에 수업하러 갑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공방은 학습 부진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요.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수업료는 조금만 받고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제가 이렇게 바쁘고 신나게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랫말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실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CHAPTER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대상

1 사용기관 등록 유형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2 사용기관 등록 절차

사용기관 등록요건 검토 ▶ BC카드 가맹점등록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 (www.lllcard.kr) ▶ 사용기관 등록 승인 (7일 내외 소요)

3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제출 서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 시, 기관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기관 유형별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해당 조례	•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지정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지정서, 평생교육 관련 운영 조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해당 조례	• 읍·면·동 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지방자치단체 운영조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대학부설 시설은 신고증, 설치보고 공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 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원격대학형태) 교육부장관 인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요청서 (공공직업훈련시설)	
		나.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예술법인 단체	문화예술 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정관 • 전년도 사업 실적	• 지정서의 '주요목적사업'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명시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유의사항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정관 • 전년도사업 실적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지정서	
도서관	도서관법 (해당조례)	제2조(정의)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서관인정서 또는 도서관등록증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서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박물관등록증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미술관등록증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정관 • 전년도 사업 실적	• 등록증의 '주된 사업'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명시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여성인력 개발센터	양성평등 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해당조례)	제3조(정의)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관련 조례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직영기관) • 위탁기관임을 증명하는 협약서(위탁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전년도 사업실적	• 교육 목적 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출판시설, 근로사업장은 등록 가능 시설에서 제외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정의)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설립 근거 관련 조례(공공복지관) 또는 회복지시설 신고증(민간복지관) • 정관 • 전년도 사업 실적	• 사업 실적은 '성인 대상 교육' 실적에 한하여 제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해당조례)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기관 유형	관련 법령	기관 정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지방문화원설립 인가증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에 의하여 '독서실'로 분류된 경우, 등록 불가 •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도로교통법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 인가서 • 정관(시간제등록생 내용 포함) • 시간제등록생 모집 공고 등	

※ 그 밖에 국가 · 지자체가 설치 ·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사용기관 등록 가능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방법

1.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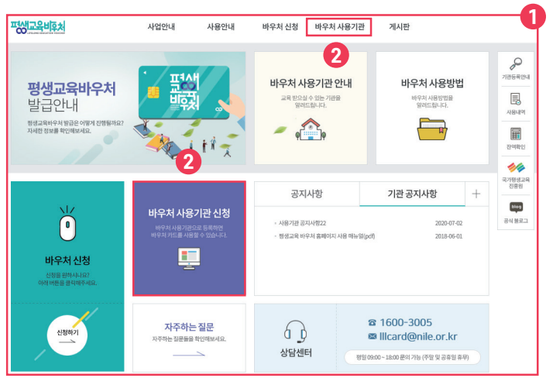

❶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 접속
※ 지원 브라우저 환경 : Explorer 10 이상, Chrome (크롬)브라우저 등

❷ 홈페이지 상단의 [바우처 사용기관] 메뉴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클릭 또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클릭

2. 약관 동의 절차

❶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각각의 약관을 확인

❷ 약관 동의 여부 선택 후 [다음] 클릭
-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시스템 이용 등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은 사용기관 담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수집되는 정보로 선택 동의사항

3. 본인 인증 절차

❶ 본인인증 방식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선택

❷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입력 후 [인증] 클릭
※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인증에만 사용되며 수집하지 않음.

❸ 각 인증 방식에 따라 본인인증 수행

4. 사용기관 신청서 작성 (기관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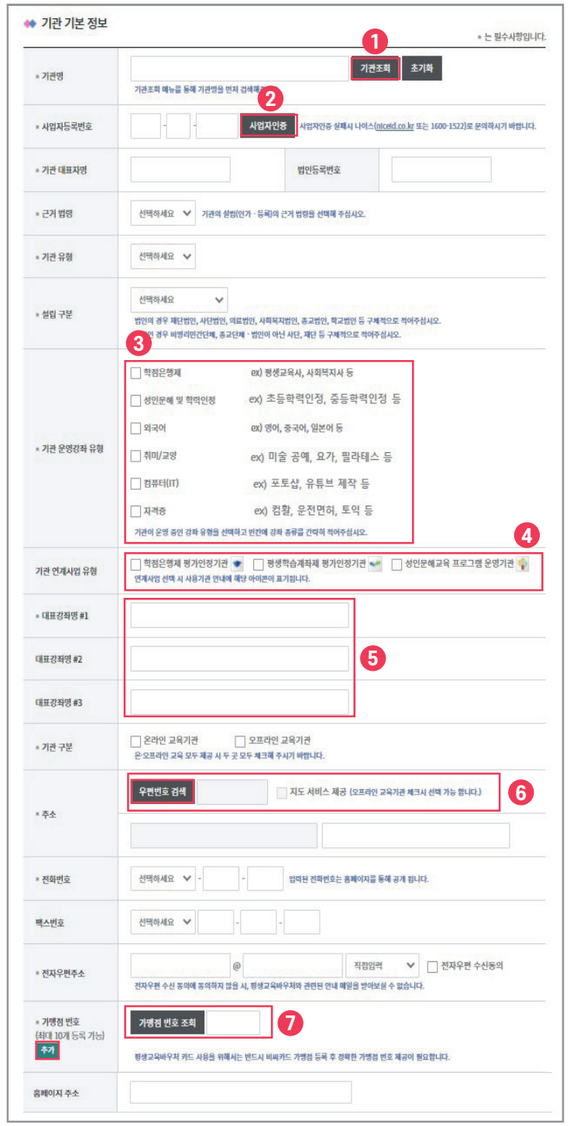

❶ [기관조회] 클릭 → 기관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 기본 정보 자동 입력
※ 기관조회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정보 연동 기능으로, 향후 교육과정 등록 시 평가인정과정을 연동하여 등록
※ 자동 입력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 필요
※ 기관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기관은 신청정보 직접작성 가능
※ 재신청 기관의 경우 기관명 뒤에 (재신청)을 붙여 작성
ex)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재신청)

❷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사업자인증]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 검증 실행

❸ 기관이 운영 중인 강좌 유형을 선택하고 빈칸에 강좌 종류를 간략히 기재
※ 중복 선택 가능
※ 학점은행제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등

❹ 해당 사용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제도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선택 시 해당 연계 제도 아이콘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안내됨.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정 받은 기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 학습계좌를 등록·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 인정받은 기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ex)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❺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강좌명에 한해 최대 3개 입력
※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거짓 또는 과대 표시,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일 경우 삭제될 수 있음.
ex) 평생교육바우처 1위, 업계 최초, 바우처 장학지원, 유일 등

❻ 주소 입력 및 "지도 서비스 제공" 선택 시 해당 기관의 지도 정보 제공
※ 지도 서비스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에게 안내되며, 오프라인 교육기관에 한하여 제공됨.

❼ 바우처 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BC카드 가맹점 등록 및 번호 입력 필요
※ "가맹점 번호 조회" 클릭 시 해당 기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가맹점 정보 조회가 가능
※ 조회된 가맹점 중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번호만 입력하며, "추가"를 클릭하여 최대 10개까지 등록 가능

가맹점 번호 알아보기

▪ 가맹점 등록 방법

BC카드 가맹점센터 1588-4500 상담사 연결을 통한 가맹점 등록 필요

※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BC카드 가맹점 등록 필요

▪ 가맹점 번호 확인 방법

BC카드 가맹점 번호(가맹점코드)

특정 업소에서의 카드결제를 위해 BC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로 **'7번'**으로 시작하는 총 9자리 일련번호

BC카드 가맹점 번호 확인 방법

홈페이지	BC카드 가맹점 홈페이지(https://www.bccard.com/app/merchant/StoreNoInqActn.do)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가맹점 번호 조회 가능
콜센터	BC카드 가맹점센터 1588-4500(가맹점 전용) → 다이얼 1번(가맹점) → 사업자등록번호와 * 입력
협력사	업소(사업자)가 거래하는 VAN사(단말기 서비스사) 또는 PG사(결제대행사) 문의
영수증	해당 업소에서 카드 결제 승인 시 출력되는 매출전표(영수증) 확인

TIP 가맹점 번호 관련 용어

용어	설명
가맹점 번호	특정 업소에서의 자사카드 결제를 위해 각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 '가맹점 번호'와 '가맹점코드'는 동일한 용어로 통용됨.
VAN사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업체(카드사와 POS기를 중개) ※ BC카드 가맹점 신규 신청 업무 포함(가맹점 모집인)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온라인 등 가맹점을 대신하여 결제를 대행하고 전자상거래를 정산하는 업체

5. 사용기관 신청서 작성 (업무 담당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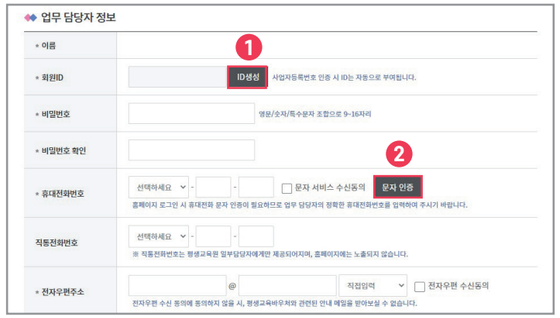

1 **[ID생성]** 클릭 → 기관 아이디가 자동 부여됨.

2 **[문자 인증]** 클릭

※ 로그인 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 필요하므로 업무 담당자의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입력 필요

6. 사용기관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정보보안서약서 및 준수사항 동의)

1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제공되는 팝업창을 통하여 기관 유형별 제출 서류 확인

2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사용기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연도별 평생교육 강좌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기관의 설치·등록·신고 근거 법령에 성인 대상 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정관 및 교육활동 운영실적 등 별도 제출 필요

※ 기관 유형별 제출 서류는 안내서 6~11p 참조

3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서약 및 준수사항을 확인 후 동의 여부 선택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미동의 시 사용기관 신청 불가

※ [신청] 버튼 클릭 이후로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입력정보와 증빙자료 확인 필요

7. 사용기관 신청서 작성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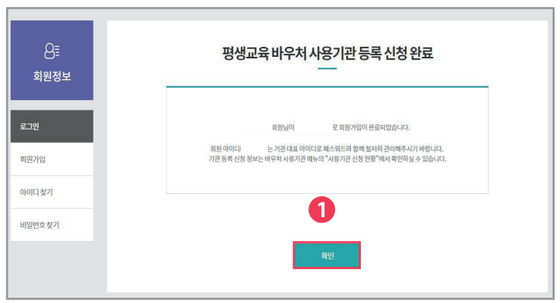

1 사용기관 등록 신청 완료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클릭

※ 기관 대표 계정인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기관 등록 신청 현황은 바우처 사용기관 메뉴의 [사용기관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메뉴 이용 가능

※ 신규 기관 등록 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기관으로 [NEW] 표기되어 안내되어짐.

8. 사용기관 신청 현황 조회를 위한 로그인

1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선택

2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 문자인증 후 로그인 가능

9. 사용기관 신청 현황 조회

1 홈페이지 상단 메뉴 [바우처 사용기관] - [사용기관 신청 현황] 클릭

2 접수번호, 신청상태, 처리일, 신청 시 입력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3 신청인(업무담당자) 정보 조회

4 신청 시 업로드 한 증빙자료 조회

바우처 사용기관 검증 및 승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증빙자료 및 BC카드 가맹점 연계 등 사용기관 검증 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승인되어짐.(사용기관 등록 7일 내외 소요)

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역할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아울러,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①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 ②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지원, ③ 개인 정보 보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1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기관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공 정보 : 기관 운영 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수강료, 강좌 운영 기간 등

• 제공 방법 : 입력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

– 기관 운영 정보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시 정보 입력, 연 2회 정보 최신화 실시

※ 기관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변경 시 신속히 변경사항 입력 요망

※ 연 2회 추진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정보 현행화' 기간에 홈페이지 접속하여 정보 업데이트

– 교육과정 정보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한 경우 정보 입력

※ 입력된 수강 정보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검색 화면에 바우처 사용자가 이용하는 교육과정으로 안내 예정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정보 현행화 영역 및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현행화 기간' 중 기관 정보 변경 사항을 최신화하여 이용자가 사용기관 검색 시 활용하도록 하고, 연도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 등 모니터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구분		세부 영역
1. 기관 기본 정보	내용	• 추가기관명, 근거법령, 기관유형, 기관 운영 강좌 유형, 기관구분(온라인/오프라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가맹점 번호, 홈페이지 주소 ※ 사용기관 홈페이지 주소가 접속 연결 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현행화 요청
	방법	• [바우처 사용기관]-[기관 정보 수정]-[수정]-[저장]
2. 기관 업무담당자 정보	내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통전화번호 ※ 수정이 불가한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대표자명, 주소, 가맹점 번호의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를 이용하여 현행화 요청
	방법	• [바우처 사용기관]-[기관 정보 수정]-[수정]-[저장]

구분		세부 영역
3. 사용기관 안내에 제공되는 기관정보 최신화	내용	• 사용자 안내 강좌명 : 사용기관 검색 시, 이용자에게 사용기관의 강좌명 안내 ※ 홍보를 위해 안내되는 교육과정명은 변경 가능 • (오프라인 기관) 지도 서비스 제공 : 해당 기관의 지도 정보 제공 여부
	방법	• 사용자 안내 강좌명 : [바우처 사용기관]-[교육과정 정보]-[사용자 정보 제공 체크]- [사용자 안내 강좌명 입력]-[등록] • 지도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사용기관]-[기관 정보 수정]-[수정]-[지도 서비스 제공 체크]-[저장]
4. 평생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제출	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검증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제출 및 현행화
	방법	• [바우처 사용기관]-[기관 정보 수정]-[수정]-[파일첨부]-[저장]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의 경우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에 증빙서류 첨부 후 수정 요청
5. 연도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 제출	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강좌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제출(기관자율양식) ※ 기관별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평생교육바우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시 수강료 책정 등에 관한 자료 제출 필수
	방법	• [바우처 사용기관]-[기관 정보수정 요청]-[등록]-[운영계획서 첨부 및 내용 작성]-[등록] ※ 운영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에 첨부 후 수정 요청
6. 통합검색 결과에 제공되는 신규 입력 정보	내용	• 대표 강좌명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검색기능 이용 시 기관 대표 강좌 정보 제공 ※ 운영 중인 대표 강좌명에 한해 최대 3개 입력 가능(강좌명 또는 과정 연계된 자격증명) ex)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사회복지사 자격과정', '보육교사 자격과정', '피아노 교실', '운전면허 취득과정'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거짓 또는 과대 표시, 사실과 다른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강좌명의 경우 삭제될 수 있음. ex) 평생교육바우처 1위, 업계 최초, 바우처 장학지원, 대한민국 유일 등 • 강좌 소개 : 통합검색을 통한 검색결과로 강좌 정보 제공 ※ 강좌 소개는 100자 내외 입력 가능
	방법	• 대표 강좌명 : [바우처 사용기관]-[기관 정보 수정]-[수정]-[대표 강좌명 입력]-[저장] • 강좌 소개 : [바우처 사용기관]-[교육과정 정보]-[해당 강좌명]-[수정]-[강좌소개 입력]- [저장]
7.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과정 영역별 분류	내용	• 강좌 분류 : 평생교육 6대 영역(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강좌 검색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강좌 영역 분류 재확인 및 입력 필요
	방법	• [바우처 사용기관]-[교육과정 정보]-[해당 강좌명]-[수정]-[저장]

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수강 신청 내역 등록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바우처 이용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 등록하여야 함.
  ※ 결제내역은 결제 이후 기관 업무 담당자 e-mail로 발송되며,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수강 신청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등록 내용
  - 이용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바우처 카드 사용내역(승인번호, 승인일자) 등
  - 교육과정 정보 : 교육과정명, 분류, 시작 및 종료일, 관리자명, 총 교육일수, 교육시간(회당), 수강료 등
- 등록 기간 : 수강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출결 사항 보고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바우처 이용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한 교육과정의 출결사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출결 관리는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수강 학습자의 출석 및 결석 관리 활동을 말함.
- 등록 기간 :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
  ※ 출결 사항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모니터링 기관으로 우선 선정 예정
  ※ 출석일수 입력 이후 수정 필요 시 60일 이내 출석일수 수정 가능
- 보고 방법
  - 출석 결과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 보고하며, 등록된 교육과정 내 학습자 정보에 출석 일수/시간 입력 후 저장
- 보고 결과의 처리
  - 수강 신청 교육과정의 출석률 80% 미만 시 미이수로 처리
  ※ 이수·미이수 처리 결과는 출결 사항에 따라 자동 처리되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됨.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출석부, 바우처 사용 관련자료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 평생교육바우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등에 따른 사실 확인 필요 시 바우처 사용기관은 자료 제출에 응하여야 함.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출결사항은 향후 바우처 이용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용기관은 사실에 입각하여 출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오류, 불성실 보고 시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방문신청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바우처 이용자가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신청 지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을 위한 자격 서류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스캔하여 첨부

3 개인정보보호

평생교육바우처 개인정보 취급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며, 사용기관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홈페이지 내 온라인 서명 방식)하여야 함.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평생교육바우처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보호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내지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와 이에 따른 관리 활동, 교육 참여 및 자체점검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용기관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세부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 게시판 – 자료실 31번 게시물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정보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자의 평생교육이용권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용권을 결제하여야 함.
- 바우처 이용 여부는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기관 담당자 등은 바우처 이용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강사 또는 타 학습자에게 해당자가 바우처 이용자임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 · 관리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함)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발생일 즉시 등록 사항 변경 입력 혹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수강신청한 경우 그 내용을 수강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매 강좌 출결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며, 강좌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용자의 출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강 강좌의 출석률 80% 미만 시 중도탈락으로 간주되어 차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에 배치 되는 등 향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용기관은 사실에 입각하여 출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오류, 불성실 보고 시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출석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관련 자료 등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바우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등에 따른 사실 확인 필요 시 자료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보호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내지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6.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바우처를 발급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바우처를 부정 · 불성실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 과장 홍보 등을 할 경우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중지 및 회수, 참여 제한, 부정 사용액 환수, 소관 부처 및 행정기관 등에 행정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평생교육바우처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사업 운영 관리에 적극 이행 · 협조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정보 전달 기능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내 검색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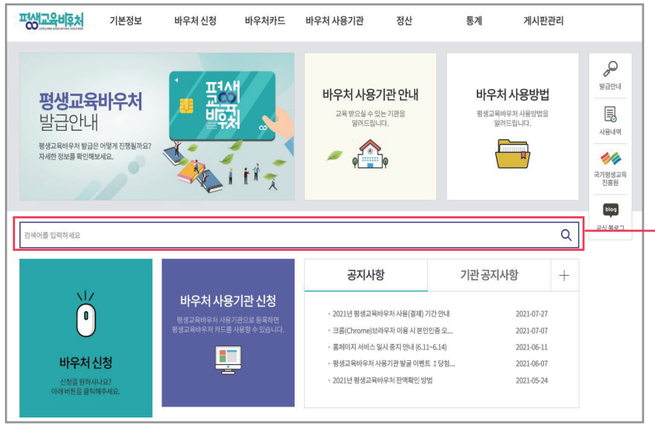

원하는 교육과정, 기관명 검색 가능

❶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메인 검색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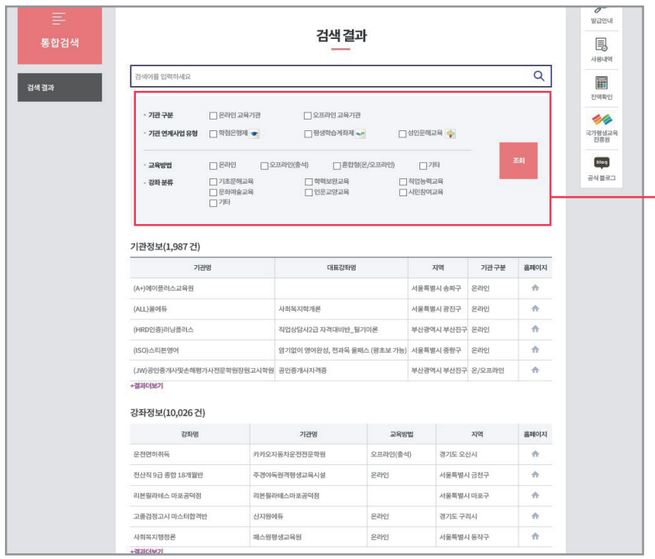

[기관 구분], [기관 연계사업 유형], [교육방법], [강좌 분류] 세부 항목 선택 후 검색 가능

❷ 검색을 통해 기관·강좌정보 등 확인 가능

▪ 카카오톡 알림톡 정보 전달 서비스

[평생교육바우처 카카오톡 공식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소식과 평생교육바우처 업무 관련 정보 안내를 카카오톡 채널 및 알림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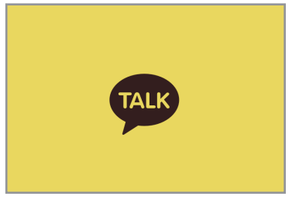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평생교육바우처) 입력하기

채널 클릭 후 추가하기

▪ 네이버 공식 블로그 운영

[평생교육바우처 네이버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lllcard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공식 블로그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이웃추가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네이버 공식 블로그 접속하기

블로그 하단의 이웃추가 버튼 클릭하기(로그인 필요)

CHAPTER

3.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1 강좌 수강료 결제 방법

1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강좌 수강료 포함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해 한번에 결제 가능(교재·재료비 단독 구매 불가)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평생교육희망카드 연계 계좌에 초과 금액 입금 후 결제 가능

2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2 강좌 수강료 환불 방법

1 환불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취소는 매입내역 전체를 취소하거나, 일부 금액 부분 취소 가능

부분 취소 방법

- BC카드 콜센터(1588-4500)를 통한 부분 취소 요청 : 가맹점 번호, 해당 거래 건 승인번호, 거래일자, 카드번호, 금액정보 등 필요
- 결제 전액 취소 후, 재결제 : 기존의 바우처 카드 결제 건 전액 취소 후, 필요 금액 만큼 카드 재결제 (개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개인부담금 우선적 복원)
  ※ 평생교육바우처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2~3일 후, 사용금액 한도 복원

CHAPTER

4. 자주하는 질문(FAQ)

Q1 기관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기관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를 통하여 증빙서류(변경된 주소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와 함께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관 등록 취소 후 신규 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관 등록 취소 요청 시, 기존 학습자 출석정보(이수/미이수) 입력 완료가 필요합니다.

Q2 등록 강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력인정, 자격증 취득, 취미, 교양 등의 정규강좌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1회성 특강 성격의 이벤트 강좌, 유아·아동 대상의 강좌는 불가합니다.

Q3 PG사 변경 및 가맹점 번호가 변경 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BC카드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가맹점에 한하여 결제 가능하므로 사용기관의 가맹점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번호를 BC카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번호를 변경한 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4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취소는 매입내역 전체 취소, 부분 취소 모두 가능합니다.
- BC카드 콜센터(1588-4500)를 통한 부분 취소 요청 : 가맹점 번호, 해당 거래 건 승인번호, 거래일자, 카드번호, 금액정보 등 필요
- 결제 전액 취소 후, 재결제 : 기존의 바우처 카드 결제 건 전액 취소 후, 필요 금액만큼 카드 재결제
  이때, 개인부담금(개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개인부담금이 우선적으로 복원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2~3일 후, 사용금액이 재충전되오니 카드 재결제를 하실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수강료가 35만원을 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3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하여 한 번에 결제하시거나, 초과하는 금액만큼 다른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6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회원가입비, 응시료 등 결제가 가능한가요?

A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교재비·재료비, 사용기관 이외 기관의 교재·재료비, 회원가입비, 응시료 등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Q7 평생교육바우처 잔액을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잔액은 이용자가 직접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현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기관에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 비씨 페이북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회원가입 필요)

Q8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는 아래 그림과 같은 평생교육희망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 시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결제 내역이 전송 됩니다

Q9 교육과정의 연장, 축소, 휴강 등 일정 변경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사 일정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사용자가 있다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이수완료 전인 경우에는 강좌 시작일/종료일은 직접 수정이 불가하므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게시판] – [1:1상담]에 수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학습자 정보 입력시 '학습계좌번호불일치'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학습계좌번호가 무엇이며, 불일치 시 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나요?

A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관리하여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학습계좌번호란 평생학습계좌제 사용자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말하며, '학습계좌번호 불일치'는 사용자가 평생교육바우처 회원가입 시 본인의 학습계좌번호를 오입력하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용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계좌제에 관한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제도 소개 영상(www.all.go.kr)을 제공하여 드리니 참고하시어 기관을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LIFELONG EDUCATION VOUCHER

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희망하시는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분들이
사용기관 등록 관련 사항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안내서에 실린 이미지는
실제 화면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 등록 안내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서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강대중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화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
홈페이지	www.lllcard.kr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